



알 아 봄 시 다

'94 양돈정책 어떻게 펼쳐지나?

-홍보부-

금년도 농림수산부가 추진할 축산사업계획중 양돈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농림수산부는 '94 축산시책 방향을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품질 고급화 및 유통혁신 ▲위생 및 검역기능 강화 ▲축산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도 돼지고기 소비량을 1인당 14.6kg, 연간 총 64만7천9백톤으로 잡고, 전년이월 3천9백톤, 국내생산 65만9백톤, 수입 7천1백톤, 수출 1만4천톤을 통해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해 보다 6.3% 늘어난 6백30만두(연말)를 사육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면 농림수산부 축산국내 각 과별로 금년도에 추진할 양돈정책을 양돈농가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요약 소개한다.

□ 축정과 소관 사업

1. 양축자금 지원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으로 4천

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호당 8백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연 5%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융자추천 신청서를 관할 축산계장 또는 축협조합 대의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축산농가 해외연수

축종별로 7개반으로 나뉘 총 151명의 양축농가를 해외연수시킬 계획이다.

양돈분야는 8월중 10일 일정으로 23명을 덴마크, 네덜란드에 파견한다. 대상자는 번식돈 50두, 비육돈 500두 이상 사육농가로 5년 이상 농장경영자며, 선발은 3월 30일까지 각 도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 축산경영과 소관 사업

1.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

규모화, 자동화, 환경개선, 기술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업 양돈농가, 종돈장 경영자, 영농조합법인, 축협 등에 촉발기금에서 6백8억3천만원과 농특회계에서 1백68억7천만원 등 총 7백77억여원이 지

원된다.

이 자금은 기반시설, 축사시설, 급이·급수시설, 환경 제어시설, 관리기계기구, 분뇨처리장비 및 시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 개인은 1인당 2억원, 법인은 자본의 200%,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3~5% 조건이다. 지원비율은 자담 30% 융자 70%이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관할 시군에 3월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축산단지 조성사업

양돈농가 5명 이상이 양돈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인은 1인당 3억원, 법인은 자본금의 200%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3~5%로 '93년과 '94년 연속사업인 축산단지 조성 사업량은 23개소로 '93년도에 1백61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금년에 1백60억원이 지원된다. 양돈단지 조성 사업 희망자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가축계열화 사업

가축계열화 사업에 총 280억원이 지원된다. 계열화 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양돈은 5년 이내에 돼지 3만두 이상을 계열체제로 사육해야 한다. 생산자단체 주도 계열화 사업자는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이며, 민간기업주도 계열화 사업자는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8%이다.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해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축산기계화 사업

농가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축산 자동화시설, 기계·기구 구입비를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지원한다(자담 30%, 융자 70%).

지원대상자는 전업농 또는 전업농 지향농가이며, 사업 희망자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총 지원금액은 2백억원이다.

5. 돼지 능력검정 사업

대한양돈협회 능력검정소를 통해 돼지 능력검정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금년도 검정규모는 제1검정소(이천) 1,800두, 제2검정소(하동) 1,440두 등 총 3,240두이다. 금년에는 등심 단면적 측정기 구입비로 9천8백만원을 보조한다.

□ 축산물유통과 소관 사업

1. 축산물 가격안정대 운영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법 제34조에 의거, 3월 31일까지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와 돼지의 가격안정대를 발표한다. 가격안정대는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을 설정하여, 하한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수매비축을 하고, 상한가격 이상 오를 경우 수매비축육을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

참고로 '93년 돼지 가격안정대는 상한가격 14만5천원(90kg 생체기준, 지육은 kg당 2,510원), 하한가격 10만원(지육은 kg당 1,740원)으로 책정되었었다. 금년부터 가격안정대는 법적인 뒷받침하에 운영된다.

2. 한우전문 판매점 설치

대도시 등 대량소비지에 한우전문 판매점 설치를 지원한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축산관련단체에서 설치할 경우 직할시급 이상은 개소당 2억5천만원, 직할시급 미만은 2억원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이며, 축협과 한농, 축산유통은 연 3%, 농협, 협업체, 축산관련협회는 연 5%, 민간은 연 8%이다.

사업 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우전문 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의 돼지고기, 닭고

기, 기타 축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식료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데, 국내산만 판매해야 한다.

3.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

금년에 총 6백73억3천만원을 지원해 돼지고기 1만4천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양돈농가에 국제규격돈 생산장려금 1백20억원을 보조해 줄 계획인데, 수출단지에 참여하는 농가엔 수출돼지 두당 1만원, 비참여농가엔 8천원씩 차등 지원된다.

<세부내용은 본지 2월호 “돼지고기 수출종합대책”과 3월호 “국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급요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육류도체등급제 실시

축협 축산물 등급판정소를 통해 소와 돼지의 도체 등급을 실시한다. 1단계로 서울(축공, 우성, 협진)은 '92년부터, 2단계로 서울+지방 반입육을 '93년 7월부터 도체등급을 실시한데 이어 3단계로 금년 7월1일부터 부산과 부산에 반입되는 지방육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 그후 4단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45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며, 3월에 서울 지역, 7월에 부산지역을 축산물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5. 돼지고기 즉석 가공·판매시설 설치사업

자가 사육한 돼지고기를 직접 가공·판매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 사업대상은 농가협업조직, 축협, 양돈농가 등이며, 금년에 3개소에 2억원씩 지원해 준다. 설치장소는 백화점, 슈퍼마켓, 한우전문판매점에 병설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3~5%이다.

개소당 지방비 보조 4천만원, 융자1억, 자담 6천만원이다.

6. 축산업 자조금지원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돈협회와 양계협회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축산업자조금을 1억원씩 2억원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보조금은 자조금 사업주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 초지사료와 소관 사업

1. 배합사료 수급계획

금년에 양돈용 4백54만3천톤, 축우용 4백96만7천톤, 양계용 3백48만톤, 기타용 46만톤 등 총 1천3백45만톤의 배합사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대용유는 양돈용 1만1천9백50톤, 축우용 7천8백20톤, 기타용 2백30톤 등 2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사료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료관련 세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축위생과 소관 사업

1.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도축장 등에서 채취한 축산물 4만5천건(돼지 2만3천건, 소 1만1천건, 닭 1만1천건)에 대해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설과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2. 축산공해 방지시설 사업

축산경영비 절감과 수질오염 방지, 가축 분뇨의 자원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중 총 9백50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법규제이하 농가가 설치하는 간이정화시설 5,200개소를 선정, 개소당 4백20만원을 보조 50%, 융자 50% 비율로 지원한다.

신고대상농가가 설치하는 정화시설은 3,940개소에

○ 축산분뇨 처리시설자금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당 사업비	지원율(%)			재원	
		용자	보조	자담		
개별 시설	간이정화시설 (법규제이하)	4.2	50	50	-	농특, 축발기금
	정화시설 (신고대상)	10	50	50	-	〃
	비료화시설 ①	100	70	-	30	〃
	비료화시설 ②	50	70	-	30	축발기금
	퇴비처리장비	10	100	-	-	농특회계
공동 시설	축분발효시설	1,000	20	50	30	농특, 축발기금
	분뇨운반장비	30	20	50	30	농특회계
	톱밥제조시설	300	70	-	30	농특, 축발기금
	분뇨공동저장탱크	50	20	50	30	〃
	정착훈구조개선	300	-	100	-	농특회계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3%

○ '94 축산분뇨 처리시설자금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량	소요자금					총 사업비
		농특(축발)지원			지방비	자담	
		계	용자	보조			
간이정화시설	개소 5,200	21,840	10,920	10,920	-	-	21,840
정화시설	3,940	39,400	19,700	19,700	-	-	39,400
개별농가비료시설 1	50	3,500	3,500	-	-	1,500	5,000
개별농가비료시설 2	100	3,500	3,500	-	-	1,500	5,000
개별농가퇴비 처리장비	200	2,000	2,000	-	-	-	2,000
가축분뇨운반장비	10	210	60	150	-	90	300
축분발효시설	18	12,600	3,600	9,000	-	5,400	18,000
톱밥제조시설	4	840	840	-	-	360	1,200
분뇨공동저장 탱크	10	350	100	250	-	150	500
정착훈구조개선	6	1,800	-	1,800	-	-	1,800
계	9,538	86,040	44,220	41,820	-	9,000	95,040

개소당 1천만원을 보조 50%, 용자 50%로 지원된다. 비료화시설은 개소당 5천만~1억원을 자담 30%, 용자 70% 비율로 지원해준다. 퇴비처리장비는 1천만원씩 전액 용자된다.

이밖에도 축분발효시설, 분뇨운반장비, 톱밥제조시설 등 공동시설자금도 용자 또는 보조해 준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자금 용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에 연리 3%이며, 무허가축사 소유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근절하기 위해 종돈장, 허가·등록양돈장,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 연 2회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두수는 종돈장 10,000두, 허가·등록 양돈장 25,600두, 도축장 출하돼지 64,400두, 긴급조사돼지 8,500두 등 108,500두이다. 검사시기는 상반기엔 5~6월, 하반기엔 9~10월에 한다.

4. 살처분 보상

우결핵, 부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30두 미만 사육농가의 돼지콜레라에 이환된 양성축은 조기 도태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가축은 소 395두, 돼지 3,000두 등 총 3,395두이며, 9억6천4백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필독

